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370호)

2021.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 영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 47조의3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 2021. 9. 2.
3. 회 부 일 : 2021.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수립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농업부문 감축목표인 160만톤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확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온실가스 감축량 1톤당 1만원으로 배출권거래시장 가격인 1톤당 2만원('21년 5월 기준)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

에 명시하고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등에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7조의3 신설)

개정안은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관리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는 그 감축실적에 대하여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7조의3(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등 추가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감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이하 “감축실적”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사업계획서와 그 이행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정부는 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한 감축실적은 정부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준 가격은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 당해 연도 감축실적 총량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감축실적의 등록 신청, 등록·관리, 인증, 정부 인센티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농업·축산부분에서 1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동 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영농활동으

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68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기관으로서 감축제도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운영기관으로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적 근거 없이 고시를 통해 운영 중인 동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면서, 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 감축실적 총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도 개정안과 같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규정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1)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법 관련(안 제47조의3제1항)

개정안은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등 추가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 방법에 대한 제한 없이 그 실적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되어 영농 활동자료를 통하여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방법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축한 경우¹⁾에만 그 실적을 국가가 등록·관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정부 측 수정의견
제47조의3(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등 <u>추가적인 활동을 통하여</u> 자발적으로 감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이하 “감축실적”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 ① ----- ----- -----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u> ----- ----- ----- ----- -----.

2) 인증 절차 관련(안 제47조의3제2항)

개정안은 인증 절차에 관하여 법률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서류 제출, 인증 기관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고시 등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1) 자발적온실가스 감축 방법론(16건) : 에너지이용효율화(4), 신재생에너지(2), 합성비료절감(3), 바이오매스활용(3), 바이오차(1), 보존경운 및 논물관리 등(3)

개정안	정부 측 수정의견
② 제1항에 따라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사업계획서와 그 이행실적보고서를</u>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u>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u>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등록 승인 및 감축실적</u> -----.

3)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 지급 관련(안 제47조의3제3항)

개정안은 정부가 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준가격을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 당해연도 감축실적 총량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우 참여 농가는 인센티브(1만원/톤)와 함께 컨설팅비, 시설비, 감축량 검증 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그 지원금액이 다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²⁾이고,

인센티브 지원 기준가격을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과 연계하여 매년 조정된 단가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2)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재정 지원액(백만원/톤) : 배출권할당업체(33만원), 목표관리업체(29만원),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142만원), 자발적감축농가(178만원)

이에 인센티브 지원가격을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후단을 삭제하고,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제4항에서 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	정부 측 수정의견
③ 정부는 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한 감축실적은 정부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준가격은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 당해 연도 감축실적 총량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록 및 감축 실적 인증 등에 드는 비용과 감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으며, ----- -. <후단 삭제>

4) 감축실적 등록·관리 절차 및 인센티브 지원 기준 등의 위임 관련(안 제47조의3제4항)

개정안은 감축실적은 등록 신청, 등록·관리, 인증, 인센티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과 현재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이미 고시로 규정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	정부의견
④ 그 밖에 감축실적의 등록 신청, 등록·관리, 인증, 정부 인센티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u> 정한다.	④ 그 밖에 감축실적의 등록 신청, 등록·관리, 인증, 정부 인센티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u> 정한다.

5) 사업 운영 위탁 규정 추가(안 제47조의3제5항 신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농식품분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정부의견
⑤ <신 설>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등록·관리·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u>

문 의 처

02)6788-5415